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91
발의일자	2023. 5. 31
회부일자	2023. 6. 2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조용진 의원 외 19명

2. 개정이유

- 독도교육 강화 사업에 재외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외교육기관 학생 대상 독도교육, 민간 교류 등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독도교육을 홍보하여 세계교육의 표준이라는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독도교육 대상에 재외학생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의2)
- 다.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가함(안 제3조)
- 라. 독도교육 강화 사업에 재외교육기관 독도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
- 마. 사업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다. 성별영향평가: 이상없음
- 라. 해당부서의견: 일부의견 있음
- 마.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독도 사랑 정신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재외교육기관의 학생(교민 자녀 등)에게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역사관을 함양하고자 개정함.
-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에 재외교육기관과의 협력, 교류 및 사업을 추가하여 교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에 반영하여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독도교육 강화 대상에 재외학생을 추가하여 규정함
- 안 제1조의2는 독도교육 강화 사업 대상기관 중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안 제3조는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가함
- 안 제5조는 독도교육 강화 사업에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함
- 안 제7조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 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경상북도 학생뿐만 아니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학생에게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을 개정 목적으로 함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발간 등의 침탈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할 상황임
- 반면에, 재외교육기관의 학생은 환경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조국에 대한 애국심, 역사관, 독도 사랑 정신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재외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교육 프로그램(독도 교과서,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 탐방 등)을 보급하는 것은 독도가 소재하는 경상북도의 교육·학예사무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교육감만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집행 부서의 의견 중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재외교육기관 학생은 경상북도교육청이 관할할 사업 범위가 아니다.” 라는 우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를 자세히 살펴볼 때 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훼손한다던가, 재외교육기관장과 교육부의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조례를 통해 계획되는 교류사업은 당연히 교육부를 경유해야 가능할 것임

- 살피건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재외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주제로 독도를 활용하고, 독도가 지닌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역사관의 교육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독도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우리 영토 독도수호 의지 확립과 세계교육의 표준이라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